

					처 장
등록번호	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	기안	법제교류협력담당관	기획조정관	차 장
등록일자	2023. 7.	이다은	박지은	최영찬	가광배 이광기
결재일자	2023. 7.				
공개구분	공 개	협조	혁신행정감사담당관 기 록 유 원		

미국 국외출장 결과 보고

2023. 7.



법제처

기 획 조 정 관 실

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

- 순 서 -

I. 방문개요	1
II. 하원 의회법제실	2
III. 국무부 법률자문실	9
IV. 법무부 법률자문실	14
V. 월드뱅크	22
VI. 중소기업처 권익옹호실	24
VII. KOTRA 워싱턴 무역관	30
VIII. 방문 성과 및 향후 계획	32
[붙임] 미국 개관	33

I. 방문 개요

① 일정: 6.28.[수] ~ 7.2.[일], 3박 5일

② 방문국가: 미국(워싱턴)

③ 출장단: 총 5명

연 번	성 명	직 위
1	이 완 규	법제처장
2	최 영 찬	기획조정관
3	박 지 은	법제교류협력담당관
4	이 다 은	사무관
5	황 승 환	사무관

④ 일자별 주요 일정

날 짜	시 간	주요 일정	면담자
1일차 6. 28(수)	10:25 11:15 14:30 18:30	• 한국(인천) 출발 • 미국(워싱턴) 도착 • 하원 의회법제실 • 주미한국대사 만찬	법제실장 대사
2일차 6. 29(목)	09:30 12:30 15:00	• 국무부 법률자문실 • 법무부 법률자문실 • 세계은행	부차관보 부차관보 상임이사
3일차 6. 30(금)	10:30 15:00	• 중소기업처 권익옹호실 • KOTRA 워싱턴무역관	국장 관장
4일차 7. 1(토)	13:20	• 미국(워싱턴) 출발	
5일차 7. 2(일)	17:25	• 한국(인천) 도착	

Ⅱ. 하원 의회법제실

1 개요

- (일시/장소) 6. 28. (수) 14:30 / 캐논 하우스 오피스 빌딩 회의실
- 참석자
 - 법제처 측 5명: 이완규 법제처장, 최영찬 기획조정관, 박지은 법제교류협력담당관, 이다은 사무관, 황승환 사무관
 - 의회법제실 측 5명: 웨이드 벌루 법제실장, 노아 읍시 부실장 외 3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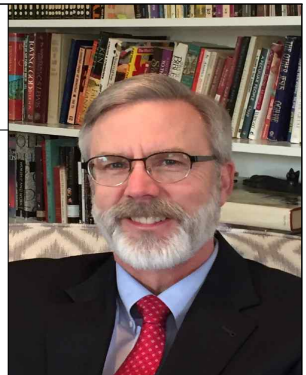
2 기관 개요

- (개요) 법제기술측면에서 의원들의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기관
 - * 상하원에 직접 설치된 의장 직속의 조직으로, 의회 전문지원 기관인 의회도서관, 의회조사국, 의회에산처, 회계감사원과 구별
- (연혁) 1916년 컬럼비아대학 입법초안조사기금(Legislative Drafting Research Fund)에서 의원 제출 법률안을 법률전문가가 대리 작성하도록 지원 → 1919년 세입법 1303조에 의해 상하원에 법제실 설치
- (주요 기능)
 - 의원이나 위원회가 정책을 제시하면 법안의 초안 작성(연간 2~3만 건) 및 작성된 초안 수정·검토 지원
 - 입법과정에서 자문 제공, 입법과정 참여(상임위, 본회의, 양원합동위원회 참여·지원) 등
- (주요 가치)
 - (비당파성/impartiality) 법제실 직원은 입법 정책의 쟁점 분석에 있어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
 - (기밀유지/confidentiality) 법제실 직원과 초안 작성 요청자는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로 간주하여, 법제실은 요청을 받아 작성하는 초안에 대하여 요청자의 동의 없이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됨

○ (조직 · 인력)

직책 명	상원	하원
Legislative Counsel	1	1
Deputy Legislative Counsel	-	1
Senior Counsels	4	13
Counsels	-	19
Assistant Counsels	30	22
Staff Attorneys	6	1
Office Manager(Administrator)	1	1
Assistant Office Manager(Administrator)	-	1
그 외 지원업무(조사, 인사, 비서 등)	6	12
합계	48	71

3 주요 면담자 프로필

성 명	E. 웨이드 벌루 Jr. (Ernest Wade Ballou Jr.)	
학 력	○ 버지니아 공과대학 과학학사 (1980) ○ 버지니아 대학교 법학박사 (1983)	
주 요 경 력	○ 1983 하원 의회법제실에서 업무 시작 ○ 1996 세무 및 공공부채 문제 전문가 ○ 2016. 7월~ 하원 법제실장(현)	

성 명	노아 읍시 (Noah Wofsy)	
학 력	○ 미시간 주립대 학사 (1983) ○ 서던캘리포니아 로스쿨 법학박사 (1986)	
주 요 경 력	○ 1986 하원 의회법제실 Assistant Counsel ○ 2007 하원 의회법제실 Senior Counsel ○ 2018 하원 의회법제실 Deputy Legislative Counsel	

4 논의 내용

1. 인사 말씀

법제처

- 국방수권법(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, NDAA) 등으로 바쁘신 중에 면담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하원 의회법제실과의 면담은 2017년 말 이후로 이번이 두 번째임
- 대한민국 법제처는 정부의 법제 업무를 총괄하는 부처로서, 다른 부처가 작성한 법령안을 법적으로 심사하고, 다른 부처의 법령안 초안 작성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

의회법제실

-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전 당시 법제처장님과 뵈었는데,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
- 법제처는 한국 정부 발의 법안과 하위법령에 대한 심사를 맡고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 법제실과 업무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
- 하원 의회법제실은 의원들이 법안 발의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비당파성(non-partisanship)과 기밀 유지(confidentiality)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

2. 의회법제실 주요 업무

법제처

- 한국 국회에서 법률안 초안을 만드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임.
국회 보좌관이 만들거나, 법제실에서 의원의 의뢰를 받고 만드는 방법, 이익단체가 제안하는 방법, 정부부처와 협의 하에 만드는 방법임. 미국은 어떤지? 의회법제실의 초안 작성 역할의 범위는?

의회법제실

- 네 가지 방법 모두 미국에서도 가능함. 의회법제실은 의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초안 작성에 관여하는데, 거의 대부분의 초안이 의회법제실을 거친다고 볼 수 있음
- 의회법제실의 초안 작성 개입 범위는 다양함
 - 처음부터 작성할 때도 있고, 작성된 초안을 수정할 때도 있음. 상임위 단계에서 초안이 수정될 때 지원하기도 함
- 의원실에서 법률적 의견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, 표현, 자구 수정만 요청하는 경우도 있음
 - 법률적인 측면을 검토할 때 주로 적용하는 기준은 일관성(consistency), 법적 정합성(legal sufficiency), 적용 가능성 등이며, 검토 결과 법안이 위헌·위법하게 될 가능성을 알려줌
 - 명확성 측면에서 법체계상 일관성(inconsistency)과 단어 선택(terms)에 대해 의견을 내기도 함. 맞고 틀렸다고 판단하기보다, 특정 표현을 썼을 때 어떤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지를 조언함
- 법제실은 법적 검토만 하지 정책적 검토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음
 - 법적 검토를 하다가 정책적 고려 필요성이 발견된 경우 그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는 있음. 그러나 정책적 사안에 대해서는 법제실보다 위원회에 전문성이 있음

3. 의회와 정부 간 소통과 견제

법제처

- 한국은 미국과 달리 국회 뿐 아니라 정부도 법안을 발의함. 최근 국회 발의 법안이 증가하는 추세로, 이에 따른 갈등도 증가하고 있음. 정부와 국회 간 원활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미국에서는 어떻게 상호 협조가 이뤄지며 서로 견제하는지?

의회법제실

- (법안 작성) 미국도 법을 해석, 집행하고 하위 규칙을 제정하는 것은 행정부이므로, 행정부가 초안 작성부터 참여하는 경우 많음
 - 특히, 공공의료(Medicare), 조세와 같이 매우 기술적이고 전문적 이슈를 다루는 몇 개의 상임위원회에서는 행정부와 정기적으로 소통하기도 하며, 초안 작성 시 많이 관여
 - 미국도 행정부-의회 간 공식적(official)인 소통 채널이 있는 것은 아니나, 비공식적으로 여러 방면에서 교류
 - 고위급에서 대통령이나 그 대리, 의회 고위급이 직접 만나는 경우도 있음. 의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법제실도 협조하기도 함
- (거부권) 법안에 대해 행정부가 이견이 있는 경우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의원 2/3 이상 찬성으로만 넘어설 수 있기 때문에 입법에 대해 대통령과 행정부 입장을 고려할 수밖에 없음
- (규제심사) 행정기관이 정하는 규제 중 경제적 영향력이 일정 수준 이상인 중요 규제(major rules and regulations)에 대해 의회가 검토(congressional review)하고 불승인 의결해 무효화할 수 있음
- (행정명령) 대통령의 행정명령(executive orders)에 대해 의회가 그 효력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음. 그러나 대개 행정명령에 대한 통제는 사법부에서 재판을 통해 함

4. 전문성 향상 방안

의회법제실

- 기본적으로 앞서 말한 **비당파성(non-partisanship)**과 **기밀 유지(confidentiality)**에 각별히 힘씀. 이 두 가지 특성 때문에 의원들이 의회법제실에 기대어 각종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것임
- 하원에서 발의되는 대부분의 법안은 의회법제실의 손을 거침. 법제실은 입법(legislation) 전문가이지 법집행(administration)의 전문가는 아니지만, **장기근속**하는 경우가 많아 정책적 식견이 생김
-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**내부적으로 법률안 입안 매뉴얼(Manual of Drafting Practices)**을 만들어 공유함. 의회 내부망에서 법제실 직원뿐 아니라 의원을 포함한 누구나 접속할 수 있음

5. 마무리 말씀

법제처

- 미국에서는 의회가 입법과정의 핵심인 만큼, 의회법제실의 역할이 막중하리라 생각함.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계를 이어나가기를 희망함

의회법제실

- 우리 법제실도 **영연방** 국가들, **브라질** 등 다른 나라 법제실과 협력하며 전문성을 키워가고 있음. 국제교류 업무를 전담하는 사무실이 법제실 내에 위치하니, 앞으로도 좋은 관계를 맺기 바람

5 방문사진



Ⅲ. 국무부 법률자문실

① 개요

- (일시/장소) 6. 29. (목) 9:30 / 국무부 회의실
- 참석자
 - 법제처 측 5명: 이완규 법제처장, 최영찬 기획조정관, 박지은 법제 교류협력담당관, 이다은 사무관, 황승환 사무관
 - 국무부 측 6명: 스티브 파브리 부차관보 외 6명

② 기관 개요

1. 국무부

- (개요) 미국 모든 대외관계 관련 직무를 수행
 - 외교정책, 국제기구와의 협력, 조약에 관한 협상, 재외공관 지휘, 국제경제정책, 공공외교, 문화교류 등을 담당
- (구성) 장관 이하 2명의 부장관, 6명의 차관, 지역·기능별 차관보
- (예산/인력) '23년 예산 530억 달러 / 직원 약 6.9만 명

2. 국무부 법률자문실

- (개요) 국무부 업무에 수반되는 모든 법적 문제들에 대해 자문
 - 국내정책, 국제 경제공조, 국제 정치 관련된 사항에 관한 자문
 - 조약안 검토, 조약 체결 시 정비해야 될 국내 법령 검토
- (인력) 300여명, 200여명의 변호사와 100여명의 지원인력으로 구성
- (조직) 국무부 내 다양한 실국 업무에 상응하는 24개 부서로 구성

3 논의 내용

1. 인사 말씀

법제처

- 외교정책과 조약 체결을 담당하는 국무부를 방문하게 되어 기쁨
- 법제처 또한 조약 체결 시 국회의 비준 동의를 필요로 하는지, 조약을 이행하기 위해 법률의 제·개정은 필요 없는지 등을 검토
- 또한 법제처는 정부 법제 업무를 총괄하는 부처로서, 다른 부처가 작성한 법령안을 심사하고, 법령을 해석하는 등의 역할을 함

국무부

- 법률자문실 대표인 Richard Visek 차관보는 현재 유럽 출장 중으로 차장님을 직접 만나 뵙지 못해 유감으로 생각함
- 국무부 법률자문실은 변호사와 법률 및 조약 전문가로 이루어져 있으며 국무부의 업무 전반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 대해 자문
- 대통령이나 장관이 외교정책을 개발할 때 조언하는데, 국제법 뿐만 아니라 국내법을 고려하고, 미국의 국제적 의무 이행방법, 국내 문제에 대한 법적 조언 등을 하고 있음

2. 조약 관련 업무

법제처

- 조약 체결 시 국무부 법률자문실의 업무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?

국무부

- 조약 체결 여부에 대한 협상은 각 소관 부처에서 수행하나 국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협상을 시작할 수 있음
- 이를 위해 법률자문실에서는 조약의 내용이나 문구 분석, 법적 문제는 없는지, 대통령의 외교정책 방향과 일치하는지 등을 검토

3. 의회와의 소통

법제처

- 미국의 경우 상원 승인이 있어야 조약이 비준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. 이처럼 의회와 소통이 필요한 경우 절차가 있는지?
- 의회가 발의한 법안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표명 방법은?

국무부

- 조약 체결을 위한 협상 과정 내내 상원과 연락을 취함
 - 조약 체결을 위해 어떤 입법이 필요한지, 조약이 왜 국익에 부합하는지, 조약에 따라 발생하는 새로운 의무가 바람직한지 등에 대해 행정부의 입장을 의회에 충분히 설명

○ 협의 방식은 다양함

- 국무부 고위급과 의회 의원, 상임위원과의 회의나, 실무자급과 의원 보좌관의 실무회의 등 회의를 진행
- 상원에서 조약을 검토할 때 공청회(hearing) 등을 열어서 행정부 대표가 증언(testimony)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도 함
- 예외적으로 상원 내에서 표가 박빙으로 갈리는 경우 장관이나 대통령이 이의가 있는 특정 상원의원에게 설명하기도 함
- 여야를 가리지 않고 커뮤니케이션하려 노력하고 있음

○ 모든 조약이 상원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님

- 가령 의회가 대통령이 특정 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입법을 하기도 함. 이 경우에는 협상을 마무리한 후 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아도 됨
- 조약에 따라 입법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하원과 논의하기도 함

○ 의회의 법안에 대해 이견이 있을 경우

- 거부권 행사를 검토할 수 있음. 대부분은 정책적 문제로 검토(예컨대 국방수권법 중 이라크 관련 부분에 대한 거부)하나 법적 문제인 경우도 있음
- 법안에 대한 의견을 행정정책 성명서(SAP: Statement of Administration Policy)로 발표하기도 하는데, 관리예산처에서 작성을 총괄하지만 국무부 법률자문실도 참여

4. 부처 간 소통

법제처

- 입법과정에서 타 부처와 이견으로 갈등이 발생하는 예도 있을 것 같은데,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는지?

국무부

- 미국은 행정기관마다 강력한 법률자문실을 갖추고 있음. 국무부는 300명 규모이나 국방부와 같은 부처에 비하면 아주 작은 수준임
- 법적 문제에 대해 부처 간 이견이 발생한 경우 기관 간 법률자문실 변호사 그룹(inter-agency lawyer group)을 통해 의견을 통일함. 실무급부터 장관급까지 다양한 회의 구성 가능
- 외교 분야에서는 국가안보위원회(NSC: National Security Commission)에서 관계 기관 법률자문실의 회의체를 소집해 이견을 조정. NSC 법률자문실장의 성향에 따라 회의 빈도와 정례성이 달라짐

5. 마무리 말씀

법제처

- 올해는 한미동맹 70주년으로, 한미관계는 양국에 있어 매우 큰 중요성을 띠. 국무부 법률자문실과 면담하게 되어 유익하였음
- 대한민국은 2030년 세계박람회를 부산에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. 미국의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

IV. 법무부 법률자문실

① 개요

- (일시/장소) 6. 29. (수) 12:30 / 법무부 회의실
- 참석자
 - 법제처 측 5명: 이완규 법제처장, 최영찬 기획조정관, 박지은 법제 교류협력담당관, 이다은 사무관, 황승환 사무관
 - 법무부 측 3명: Neil Kinkopf, Zachary Schauf, Martin Lederman 부차관보(Deputy Assistant Attorney General)

② 법무부 법률자문실 개요

- (개요) 미국 연방정부의 사법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조직인 법무부의 차관급 부서로, 대통령과 연방정부의 법적 자문 역할, 행정부 내의 로펌
- (연혁) 1934년 초기 형태로 설립 → 1951년 국(division)으로 확대 → 1953년 법무부 장관 H. Brownwell에 의해 현재의 모습을 갖추
- (기능)
 - 행정부의 다양한 법적 문제에 대해 백악관과 연방정부에 의견을 제출하거나 자문을 제공
 - 모든 행정명령안의 적법성과 형식 검토
 - 의회 승인된 법률안에 대한 보고서 작성(거부권), 관리예산처 제출
 - 법무부 소관 규칙에 대한 검토 등
- (조직) 법무차관보(Assistant Attorney General)를 정점으로, 부책임자(Deputy)와 법률고문(Attorney Advisor)으로 구성

3 논의 내용

1. 인사 말씀

법제처

- 대한민국 법제처는 정부의 법제 업무를 총괄하는 부처로서, 다른 부처가 작성한 법령안을 심사하고, 행정부 내에서 법령에 대한 유권 해석이나 자문을 하는 역할을 함
- 법률자문실은 대통령이나 연방정부 기관에 대한 법적 자문이나 의회의 법률안에 대한 법적 검토 등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, 법제처의 역할과 매우 유사하다고 생각됨

법무부

- 법무부 법률자문실은 우선 기존 법에 대한 해석을 제공함
 - 기관마다 법률자문실에서 법령을 해석하지만, 부처 간 이견이 있거나 선례가 없거나 매우 어려운 사안의 경우 우리에게 의뢰
 - 법원에 나아가기 전에 행정부 내에서 의견을 정립하는 역할
- 둘째, 의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헌법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도 법적 견해를 제공. 정부발의든 의원발의든 관계없으며, 조약도 다룸
- 현재 법률자문실 인원은 24명 정도로 다른 부처에 비해 작은 규모
 - 각 부처 법률자문실에서 대부분의 문제를 다루고 극히 까다로운 문제만 법무부 법률자문실로 오기 때문

2. 법적 자문 · 법령 해석 업무

법제처

- 부처 간 해석 갈등이 있을 때 어떤 기관이 법령해석 검토를 요청할 수 있나? 법령 해석 또는 법적 자문이 어떤 방식으로 제공되는지?

법무부

- (요청권자) 미국에서는 오로지 정부 기관만 법무부 법률자문실에 해석을 요청할 수 있음. 일반 국민이나 의회의 요청은 받지 않음
- (제공방식) 공식적인 서면, 비공식적인 문서(이메일 등), 구두 등 모든 방식으로 가능함. 다만, 구두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장부에 기록하여 내부 공유함으로써 의견의 일관성을 확보하도록 함
- (공개방식) 기밀사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내용을 웹사이트*에 공개하려 함. 특히 의회와 국민이 필요로 하는 내용의 경우 공개함. 공개 여부 · 방식을 결정하는 절차를 거쳐 판단함
 - * <http://justice.gov/olc/opinions>
- (내부검토) 모든 안건은 한명의 Deputy Assistant Attorney General에게 배정되는데, 담당 Deputy 검토 후 최소한 다른 두 명 이상의 Deputy의 검토를 받아야 하며, 마지막으로 법률자문실장 (Assistant Attorney General)이 이를 승인해야 함
- (대외표시) 해석이나 자문 의견의 경우 ‘법률자문실(Office)’ 명의로 나감. 발의된 법안에 대한 의견은 법무부장관 이름으로 의회로 나가기도 함

법제처

- 법률자문실에서 제공하는 해석이나 법적 자문은 구속력이 있는지?
결과에 대한 외부의 의문이나 문제제기는 없는지?
- 한국의 경우 결과의 객관성,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가도 포함한 해석위원회를 거치고 있음

법무부

- (구속력) 행정부 내에서는 법률자문실의 의견이 구속력이 있음
 - 1781년 의회에서 법무부장관(Attorney General)에게 행정 각부에 대해 법적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고, 장관이 우리 부서에 그 권한을 위임
 - 대통령이나 법무부장관이 법률자문실의 조언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하거나 기각할 수는 있고, 다른 정부기관은 법무부장관에게 기각 요청을 할 수는 있으나 이는 매우 드물
- (민간자문) 법률자문실의 경우 법제처처럼 민간 전문가가 포함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고, 내부의 전문성에 의존함
 - 필요에 따라 민간 부문의 의견을 물어보거나 문헌을 참고하는 경우는 있음
- (외부영향)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어떠한 외부적 압박도 법률자문실의 업무에 영향을 끼치지 않음
 - 법률자문실은 대통령이 정책적 목표를 '합법적으로(lawful)' 달성하고 추후 법원에 도전받지 않도록 돕는 것이기 때문에 외부 의견에 대해 아니라고 말하면 존중받고 있음

3. 법안 검토업무

법제처

- 의회 발의 법안에 대한 법적 자문을 제공하는 경로는? 이때 주로 검토하는 내용은? 의회와는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는지?
법안에서 위헌성이 파악됐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?

법무부

- (자문경로) 관리예산처가 의회에서 모든 발의법안 목록을 받아 그 중에서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법안을 소관 부처로 보냄
- (검토사항) 다른 부처의 경우 정책적인 검토를 하겠으나, 법무부 법률자문실에서는 합헌성, 합법성 등 법적인 부분만 심사
 - 위헌성 여부는 헌법의 모든 사항을 고려하며, 그 중에 권력분립, 즉, 입법권과 행정부의 고유 권한 간의 문제도 포함함
- (의회소통) 예외적으로 의회와 법률자문실이 직접 소통하는 경우는 의회에서 기술적 지원(technical assistance)을 요청하는 경우임
 - 의회 발의 법안에 대해 순수하게 기술적으로 초안 작성 과정에서 합헌성에 대한 의견을 제공
 - 이는 행정부 내부에 대한 자문의견과 달리 구속력은 없음
- (위헌성표명) 법률자문실이 법안의 위헌성을 자문하는 경우, 초안작성자가 정부인 경우 잘 반영되나, 의회인 경우 그렇지 않음
 - 이 경우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경우도 있으나 매우 드물
 - 행정부에서 해당 법안을 합헌적으로 해석해 집행하겠다는 내용의 행정정책 성명서(SAP)를 발표하기도 함

법제처

- 의회 입법권과 행정부의 권한 사이의 권력분립 문제에 관한 검토 사례는?

법무부

- (권력분립) 권력분립 관련하여 법안 전체가 아니라 소수 조문이 문제인 경우를 검토한 바 있는데, 이 경우 의회와 협의가 어려움
 - 이 때 거의 거부권 행사를 권장하지는 않음. 대신 행정부가 이를 어떻게 합헌적으로 집행할 수 있을지 방법을 조언함
 - 혼한 경우는 아니지만, 위헌성이 있어서 해당 조항을 집행하지 않겠다거나 집행하더라도 추후 그 조항이 문제가 되어 법원에 가게 되더라도 방어하지 않겠다고 선언(SAP)할 수는 있음
- (임기제)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에 임기를 설정한 경우
 - 대통령의 임명권에는 해임권도 포함된다고 추정하기 때문에, 법률에 임기가 있고, 별도의 면직 규정이 없다고 해도, 임기 내 misdoing에 대해서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다고 해석함
 - 의회가 임기제를 둔 것은 일할 기간의 최소치(minimum)를 둔 것이 아니라 최대치(maximum)를 둔 것으로 봄
- (추천제) 행정부 인사를 추천된 사람의 명단 중에서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의 경우
 - 보통 상원의장·하원의장이 추천자가 되는데, 대통령이 해당 명단을 고려는 하되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
- (자격) 행정부 인사의 자격요건을 법률로 정한 경우
 - 너무 엄격한 제한(예컨대, 무역대표부 대표는 외국정부를 대표한 적이 없어야 한다는 규정)의 경우 위헌으로 판단함

4. 하위규정안 검토업무

법제처

- 대통령 행정명령이나 연방기관 규칙안도 법무부 법률자문실의 법적 검토 대상인지?

법무부

- 대통령 행정명령이나 포고문, 법무부 장관이 제정하는 규칙에 대해서는 전수 검토
- 타 부처 규칙의 경우 각 기관에서 그 합헌성 여부를 검토하고, 특정한 법적 자문 문제로 자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면 우리에게 의뢰하지 않음

5. 마무리 말씀

법제처

- 법제처 업무와 법무부 법률자문실 업무가 유사한 점이 많아 논의할 것이 많았음. 향후에도 서로의 업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보다 깊은 교류와 소통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함

법무부

- 언제라도 의견을 나누는 것을 환영함. 오늘 논의와 관련된 사례, 판례 원문을 공유해 드리겠음

< 공유 자료 >

- US Court of Appeals(Decided 6.27, 2023) No. 22-5047
- OLC(6.8, 2021) Constitutionality of the Commissioner of social Security's Tenure Protection
- OLC(7.1, 1996) Constitutionality of Statute Governing Appointment of US Trade Representative

4 방문사진



V. 월드뱅크

1 개요

- (일시/장소) 6. 29. (목) 15:00 / 월드뱅크 상임이사실
- 참석자
 - 법제처 측 5명: 이완규 법제처장, 최영찬 기획조정관, 박지은 법제 교류협력담당관, 이다은 사무관, 황승환 사무관
 - 월드뱅크 측 5명: 박일영 상임이사 외 4명

2 기관 개요

- (개요) 전 세계 빈곤퇴치 및 개도국 경제발전을 목적으로 1944년 브레튼우즈 회의에서 설립된 국제연합(UN) 산하 국제 금융기관
- (기관) 국제부흥개발은행(IBRD)과 국제개발협회(IDA)로 구성
- (구성) 총재 - 이사회 - 부분부장으로 구성
- (주요 역할) 개도국 대상 금융지원, 기술지원, 정책조언 등

3 주요 면담자 프로필

성 명	박 일 영 (1968년생, 55세)		
학 력	○ 1991년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졸업 ○ 2005년 미국 듀크대 국제개발정책대학원 졸업		
주 요 경 력	○ 1992년 행정고시 합격 ○ 2015년 국제통화기금(IMF) 선입자문관 파견 ○ 2018년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○ 2020년 기획재정부 개발금융국장 ○ 2021년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장 ○ 2022년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○ 2022.11월~ 세계은행그룹 상임이사(현)		

4 논의 내용

- (기관 소개) 월드뱅크그룹은 국제부흥개발은행(IBRD), 국제개발 협회(IDA), 국제금융공사(IFC), 국제투자보증기구(MIGA), 국제투자 분쟁해결센터(ICSID) 등 5개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음
- (기관 현안) 최근에는 코로나19 이후 민간자금 유치가 가장 큰 관심사항이고 그 밖에도 기후변화, 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이슈임. 최근엔 그린수소사업이 승인되었음
- (법제 관련) 법제 관련으로 법무실장 보직이 있으며 이사회에도 반드시 참석함. 어떤 지원이든 법적인 구조(legal framework) 충족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법률문제에 대한 자문이 필수적
- (법제처 관련) 한국의 경우 문화와 시스템 구축에 강점이 있음. 법제처 법령정보시스템의 경우 개도국에 지원할 과제로 고려할만 함

5 방문사진



VI. 중소기업처 권익옹호실

1 개요

- (일시/장소) 6. 30. (금) 10:00 / 중소기업처 회의실
- 참석자
 - 법제처 측 5명: 이완규 법제처장, 최영찬 기획조정관, 박지은 법제교류협력담당관, 이다은 사무관, 황승환 사무관
 - 중소기업처 측 5명: 패트릭 텔러한티 경제연구국장 등 5명

2 기관 개요

1. 중소기업처 개요

- (연혁) 1953년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중소기업법(Small Business Act)에 서명하면서 설립되었고, 이후 기능·예산 축소 등 위기를 겪었으나, 현재는 명실상부한 미국 소기업 지원 기관으로 자리매김
- (기능) 3Cs: 자금조달, 계약, 상담 (Capital, Contracts, Counseling)
 - (자금조달) 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소기업 대상 자금 조달 지원
 - (계약지원) 국제무역, 정부계약 분야에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
 - (상담 및 교육) 비즈니스 계획수립, 재무관리, 마케팅 전략 등 지원
- (조직)



2. 권익옹호실(Office of Advocacy) 개요

- (개요) 1976년 설립된 독립부서로서, 중소기업들의 경제활동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
- (기능) 연방정부기관에게 중소기업을 대변하여 우려사항 전달,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규칙에 대한 분석과 연구, 중소기업 관련 법안 및 정책의 결정과정을 감독
 - 연방정부기관의 규칙(rules and regulations) 제·개정 시 중소기업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평가 후 해당 기관에 건의(comment) 송부

3 주요 면담자 프로필

성 명	패트릭 델러한티 국장 Patrick Delehanty	
학 력	○ 2007년 마이애미 대학교 금융학 학사 ○ 2012년 드폴 켈스타트경영대학원 석사	
주 요 경 력	○ 2007~2010년 C. H. 로빈슨, 전국 세일즈 담당자 ○ 2010~2014년 C. H. 로빈슨, Key Account Manager ○ 2012년 하원 중소기업위원회 연구 펠로우십 ○ 2014~2017년 중소기업처 권익옹호실 규제경제학자 ○ 2017~2019년 중소기업처 권익옹호실 경제연구국장 대리 ○ 2019년~ 중소기업처 권익옹호실 경제연구국장(현)	

4 논의 내용

1. 인사 말씀

법제처

- 대한민국 법제처는 정부의 법제 업무를 총괄하는 부처로서, 다른 부처가 작성한 법령안을 심사하는 업무를 함. 또한 국민과 기업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법령을 발굴하여 정비함
- 권익옹호실은 다른 연방정부기관과 의회에 중소기업의 의견과 우려사항을 전달하는 독립부서로 알고 있는데, '창업의 천국'으로 불리는 미국에서 중소기업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궁금함

중소기업처

- 권익옹호실의 업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음
첫째, 중소기업 관련 경제 동향과 정책의 분석(research)
둘째, 중소기업 관련 법안 및 규정안에 대한 검토(regulation)
셋째, 중소기업과 직접 접촉을 통한 건의사항 파악(outreach)
- 이번 면담에 각 업무별 대표 담당자가 함께 자리하였음. 법제처에서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 답변을 제공해줄 수 있기 바람

2. 경제, 정책적 분석

중소기업처

- 권익옹호실에서는 경제학자, 변호사들과 협력해 규제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매년 리포트로 발간
 - 이는 중소기업에게도 배포될 뿐 아니라 정책 입안자 등 외부인에게도 설득을 위한 자료로 활용됨
 - 자료 수집을 위해 각 주 상공회의소나 협회의 도움을 얻고 있음

3. 규제 검토 업무(regulation)

중소기업처

- 권익옹호실에는 15명의 변호사가 근무하면서, 규제(regulation) 제정 과정에서 연방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음
 - 규제유연화법(RFA: Regulatory Flexibility Act)에 근거해 다른 기관이 중소기업과 관련된 규제 검토를 준수하는지 감시
 - 정부기관에 대한 교육도 실시해서 처음부터 중소기업에 친화적인 법안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
 - 권익옹호실이 규제 제정을 막을 수 있는 권한은 없음
 - 관리예산처는 규제 전반을 검토하며 이를 막을 권한이 있는 반면 권익옹호실은 중소기업 규제에 집중하며 설득을 통해 권고
 - 다만, 연방기관은 권익옹호실의 의견에 답변할 의무가 있으며 해당 규제안이 필요하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함
 - 연간 50~75개에 달하는 의견(comment letter)을 발행하여 중소기업의 의견을 전달하고 규제의 수준을 완화하고 있음
 - 최근 사이버 보안*, 브로드밴드 등과 관련, 규제 완화 성공 사례 있음
- * 국방부에서 사이버 보안 시스템의 수준을 크게 높이려 하였는데, 이 경우 중소기업은 시스템 구축에 참여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었음
- 권익옹호실은 규제 제정 절차 전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음
 - 특히 중소기업의 목소리가 최대한 규제 제정 절차 초반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
 - 규제기관들이 중소기업규제개혁법(SBREFA: Small Business Regulatory Enforcement Fairness Act)에 따라 규제 제정 시 중소기업 패널을 구성하여 의견수렴을 하는 경우 참여하는 중소기업에게 어떤 방식으로 의견을 잘 전달할 수 있을지 교육과 조언을 제공

법제처

- 법제처의 경우 주로 법령 제정 이후 사후 정비에 힘쓰고 있음. 소상공인, 자영업자에게 영향이 큰 경제 분야 형벌을 감경하거나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재규정을 완화하기도 했음

4. 중소기업 접촉 업무

중소기업처

- 규제 알림(regulatory alert)이라고 하는데, 중소기업 규제 내용을 요약하여 SNS를 통해 알리고, 상정 중인 규제를 모아 책자로 발간
-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다른 정부기관에 전달함. 특히 중소기업이 규제에 따라 받는 경제적인 영향(이익, 비용 등)을 수치화하여, 다른 기관 설득 시 활용
- 10개의 지역별 사무소를 두고 그 지역 내 중소기업(상공회의소, 업종별 단체 포함)과 대화. 정기적 심포지엄을 열고 기업의견 수렴

5. 마무리 말씀

법제처

-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에서 법제처와 권익옹호실 업무는 다소 차이는 있지만 결국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됨
- 중소기업의 목소리가 입법과정 전반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배울 수 있게 되어 뜻깊음

5 방문사진



VII. KOTRA 워싱턴 무역관

1 개요

- (일시/장소) 6. 30. (금) 15:00 / KOTRA 워싱턴 무역관 회의실
- 참석자
 - 법제처 측 5명: 이완규 법제처장, 최영찬 기획조정관, 박지은 법제 교류협력담당관, 이다은 사무관, 황승환 사무관
 - KOTRA 측 3명: 강상엽 관장 등 3명

2 기관 개요

- (연혁) 한국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첫 번째 KOTRA 해외 사무소 중 하나로 1975년 설립
- (기능) 한국과 미국 간 무역 및 투자 협력 증진을 위한 시장조사 및 정보제공, 무역 및 투자 촉진, 네트워킹 등 담당

3 주요 면담자 프로필

성 명	강 상 엽 (1969년생, 만 54세)		
학 력	○ 1993년 고려대학교 졸업(노어노문학) ○ 2010년 헬싱키경제대 MBA 졸업 (해외마케팅)		
주 요 력	○ 1992년 KOTRA 입사 ○ 2002년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 무역관장 ○ 2008년 기획조정실 ○ 2014년 총무팀장 ○ 2016년 카자흐스탄 알마티 무역관장 ○ 2019년 안전운영지원실장 ○ 2022.3월~ 미국 워싱턴 무역관장		

4 논의 내용

- (기관 현안) 워싱턴무역관의 가장 큰 관심사는 미국 의회에서 발의하는 법안 모니터링임. 작년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세계가 들쭉였는데 이를 미리 파악·대응하지 못했다는 외부 비판이 있었음
- (애로 사항) 미국에서는 의원이 외국인이나 법인에 접촉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그 역방향은 허용되지 않아, 코트라와 같은 외국기관은 전문 로비스트를 활용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
- (법제 관련) 법률적인(legislative) 전문성도 필요함. 한국은 개정된 내용이 개정 전 조문에 합쳐져 나와 전체 내용을 파악하기 쉬운데, 미국은 개정문만 나와서 어떤 법률이 개정되면 개정문을 제정시 원문 및 이전 개정문과 일일이 대조해 보아야 함
- (법제처 관련) 현재 워싱턴에 파견된 코트라 본부 직원은 관장을 포함해 3명이고, 그 외에는 현지 채용. 미 의회 법안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법제에 능통한 전문가의 활용이 필요해 보임

5 방문사진



VIII. 방문 성과 및 향후 계획

□ 방문 성과

- (교류대상 확대) 그 간 아시아에 집중되어 온 법제교류의 범위를 북미로 확장하였으며,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법제 분야에서도 미국과의 동맹관계 공고화에 기여
 - 법무부 및 국무부 법률자문실, 하원 의회법제실 등 법제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기관뿐 아니라 중소기업처 권익옹호실, 코트라 워싱턴 무역관 등 법제처와 관련된 다양한 업무 분야의 기관 방문
- (교류범위 다각화) 법제처 핵심 업무인 법제심사를 포함하여 법령 해석, 조약 검토,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위한 법령 정비, 세계 법제 등 법제처 업무 범위 전반에 대해 미국 기관과 경험 공유
 - 삼권분립에 기반한 대통령제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에서 의회와 연방정부 기관 간 원활한 소통 방안 모색
 - 법제업무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하원 의회법제실, 법무부 법률자문실, 국무부 법률자문실 등 전문기관 사례 학습
- (한국법제 공유) 한국의 국가법령정보시스템, 세계법제정보센터나 코로나19 이후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법령정비 사례 등 법제처 업무 우수사례 소개

□ 향후 계획

- 면담 시 법무부, 중소기업처 등에서 제공받은 자료 내부 공유
 - * 삼권분립 관련 법무부 법률자문실 검토보고서, 중소기업처 발간 자료 등
- 미국 법제기관(법무부, 의회법제실 등)과의 소통 채널을 구축하고, 향후 법제 선진국인 미국과 내실 있는 법제교류 지속 노력

□ 일반사항 *추정치

- 수 도 : 워싱턴(Washington, D.C.)
- 인 구 : 약 3억 3,329만명('22)*
- 면 적 : 983만km²(한반도의 약 45배)
- 인구구성 : 백인(61.6%), 흑인(12.4%), 아시아계(6.0%), 원주민(1.3%), 다인종(10.2%), 기타(8.4%)
* Hispanic : 전체 인구의 18.7%
- 종 교 : 개신교(40%), 가톨릭(21%), 몰몬(2%), 유태교(2%), 이슬람(1%), 무교/기타(34%)('22)

□ 정치현황

- 정부형태 : 연방공화국(대통령 중심제)
- 의회구성 : 상하 양원제
 - 상 원 : 100석(임기 6년)
 - 하 원 : 435석(임기 2년)
- 주요정당 : 공화당(Republican Party)
민주당(Democratic Party)
- 정부 주요인사
 - 대통령 : 조 바이든(Joe Biden)
 - 부통령 : 카말라 해리스(Kamala Harris)
 - 국무장관 : 안토니 블링컨(Antony J. Blinken)

□ 경제현황 *추정치

- 국내총생산(GDP) : 25조 351억불('22)*
- 1인당 GDP : 75,180불('22)*
- 경제성장률(GDP기준) : 2.1%('22)*
- 교역규모('22)*
 - 상품수출 : 2조 856억불
 - 상품수입 : 3조 2,773억불
- 공적개발원조(ODA) 순지출 : 423.1억불('21)*

□ 우리나라와의 관계

- 수교일자
 - 1882.5.22.(조·미 우호통상항해조약 체결)
 - 1949.1.1.(미국, 대한민국 정부 공식 승인)
- 공관현황 : 상주 대사관('49.3.25. 설치),
9개 총영사관 및 4개 출장소
- 수출입 현황 및 주요 품목('22)
 - 수 출 : 1,098억불
 - 자동차, 자동차 부품, 산업용 기계 등
 - 수 입 : 818억불
 - 원유, 반도체 제조용 장비, LPG 등

□ 재외국민 현황

- 미국지역 재외동포 현황('21) : 약 263만명

□ 인적교류 현황 ('21)*

- 방미 : 약 20.2만명
- 방한 : 약 20.4만명

□ 북한과의 관계

- 2018.6.12. 1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(싱가포르)
- 2019.2.27.-28.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(하노이)
- 2019.6.30. 판문점 남북미 정상 회동

□ 주요인사 교류현황

• 정상급

- '17. 6월 문재인 대통령 방미
- '17. 9월 문재인 대통령 유엔총회 참석
- '17.11월 트럼프 대통령 방한
- '18. 5월 문재인 대통령 방미
- '18. 9월 문재인 대통령 유엔총회 참석
- '18.11월 G20 계기 정상회담(부에노스아이레스)
- '19. 4월 문재인 대통령 방미
- '19. 6월 트럼프 대통령 방한
- '19. 9월 문재인 대통령 유엔총회 참석
- '21. 5월 문재인 대통령 방미
- '21. 9월 문재인 대통령 유엔총회 참석
- '22. 5월 바이든 대통령 방한
- '22. 9월 윤석열 대통령 유엔총회 참석
- '22. 9월 해리스 부통령 방한
- '22.11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계기 정상회담(프놈펜)
- '23. 4월 윤석열 대통령 방미(국빈방문)

• 기 타

- '18. 7월 강경화 외교부장관 방미
- '18. 7월 강경화 외교부장관 방미(뉴욕)
- '18. 8월 ARF 계기 외교장관회담(싱가포르)
- '18. 9월 강경화 외교부장관 방미(유엔총회)
- '18.10월 폼페오 국무장관 방한
- '18.12월 강경화 외교부장관 방미(워싱턴)
- '19. 2월 중동 평화 안보 증진을 위한 장관급 회의 계기 외교장관회담(바르샤바)
- '19. 3월 강경화 외교부장관 방미(워싱턴)
- '20. 1월 강경화 외교부장관 방미(샌프란시스코)
- '20. 2월 문헌안보회의 계기 외교장관 약식회담(문헌)
- '20.11월 강경화 외교부장관 방미(워싱턴)
- '21. 3월 블링컨 국무장관 방한
(제5차 외교·국방 장관 2+2회의)
- '21. 5월 G7 외교·개발장관회의 계기 외교장관 회담(런던)
- '21. 6월 G7 정상회의 계기 외교장관회담(런던)
- '21. 9월 정의용 외교부장관 방미(유엔총회)
- '21.10월 OECD 각료이사회 계기 외교장관 약식 회담(파리)
- '21.10월 G20 정상회의 계기 외교장관회담(로마)
- '21.12월 G7 외교·개발장관 확대회의 계기 외교장관 회동(리버풀)
- '22. 2월 정의용 외교부장관 방미(호놀룰루)
- '22. 4월 정의용 외교부장관 NATO 외교장관회의 참석 계기 회동(브뤼셀)
- '22. 6월 박진 외교부장관 방미
- '22. 6월 박진 외교부장관 NATO 정상회의 계기 회동(마드리드)
- '22. 8월 아세안 외교장관회의 계기 약식회담(프놈펜)
- '22.10월 한미/한미일 외교장관회담(동경)
- '23. 2월 박진 외교부장관 방미(뉴욕, 워싱턴)